

육계자조활동자금 추진현황 및 계획

편집부

1. 그 동안의 추진경과

○ 2004. 11. 9	공동준비위원회 설립
○ 2004. 11. 15	제1차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개최 - 한형석 회장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선임 및 위원 위촉(11명) - 운영규약 제정, 가축사육수수 및 축산업자 재조사 요청(농림부), 실무협의회 구성(6명)
○ 2005. 5. 4	자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(농림부 주최) - 장소 : 농림부 회의실 - 자조금 사업의 현황과 발전대책에 대해 토론
○ 2005. 5. 25	가축사육수수 및 축산업자의 수 재조사 마무리 - 시·도별 육계사육농가 : 4,204호, 사육수수 1,434,873수
○ 2005. 8. 25	제2차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개최 -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(선거관리위원장에 한형석 공동준비위원장 선임) - 대의원 선거규정 및 누락된 축산업자 추가 등록 승인 - 선출구별 대의원수(150명) 배분, 대의원 선거일정 결정
○ 2005. 9. 9	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
○ 2005. 9. 22	대의원 선거공고 및 선거인 명부 비치
○ 2005. 10. 4	대의원 후보자 등록 마감
○ 2005. 10. 24~28	대의원 선거 실시 - 74개 선거구에서 135명 대의원 선출 - 전체 농가수 투표율 61.3% 기록
○ 2005. 12. 23	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창립총회 개최 - 장소 : 분당 수의과학회관 대강당 - 대의원 정수(150명)의 2/3를 채우지 못해 유회됨(95명 참석).
○ 2006. 4. 20	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총회 개최(110명 참석) - 장소 : 농협 안성연수원 -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• 의장 : 이흥재(66표), 부의장 : 송태희(44표) - 의무자조금 거출여부 결정 • 찬성 85표, 반대 24표, 무효 1표 - 자조금 거출 금액 결정(단위 : 원/수수) • 육계 5원, 삼계 2.5원, 재래닭 7.5원, 종계 50원 - 부결사항 •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(법 제16조 2항) • 법 규정에 축산관련 단체에서 관리위원을 협의 추천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가 협의 추천한 관리위원(8명) 및 감사(2명)를 인정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임의로 결정(관리위원 13명, 감사 2명)

2. 현재 진행상황


- 대의원회(이홍재 의장)측과 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로 협의중
 - 대의원회에서는 임의로 선출한 관리위원 13명 무조건 인정 요구
 - 축산단체에서는 대의원회 의견 참조, 재추천의사 표명
 - 현재 각 단체 실무팀에서 조정 협의 중임.
- 대의원회에서 축산단체와 대의원회간에 대립되는 쟁점사안에 대해 농림부(법제처)의 법률 해석 질의(5. 26, 6. 19, 2차례 질의 요청)
 - 농림부 회신 결과(6. 30) :

- 타 축종(한우, 양돈)의 경우 현행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자조금이 원만히 거출되고 있으나, 육계 자조금에서만 현행 법률과 규정에 미비점을 거론하고 있음.
- 이는 제도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축산단체와 대의원회 간의 의견조율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 할 것임.
- 만약 규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한 규정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한우, 양돈 자조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규정 개정에 따른 상당한 혼란과 함께 축산단체와 대의원회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기에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〈질의내용에 대한 농림부 회신 결과〉

질의내용	회신내용
1.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이 법률 제16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의거 대의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○ 동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을 축산단체에서 협의 추천하고 최종선택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별 축산업자의 수 및 육계사육수수 등을 재검증하는 행위이므로 축산단체에서 협의 추천하는 내용은 법률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.
2.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이 법률 제17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는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○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는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도록 한 규정은 각 축산단체에서 감사인원의 배분과 감사추천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행정절차이므로 동 운영규정은 법률 제17조 제5항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.
3. 대의원회 운영규정이 대의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서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○ 이 규정을 대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사항이 없으므로 대의원회가 별도 심의·의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봄.
4.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이 개회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대의원 총수 과반수 출석으로 대의원회를 개회한다' 함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대의원 총수를 의미함.
5.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시 필요한 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의원회 운영규정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에 의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건의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축산단체규정의 개정절차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임.

3. 향후 추진계획

- 관리위원 구성협의를 끝나는 대로 대의원회에 통보 및 공표
→ 대의원 총회 개최 

[참고자료]

〈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〉

제9조(대의원회)④ 대의원회의 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6조(위원회의 구성)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납부한 거출금으로 조성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25인 이하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 2호의 자로 한다.

1. 축산단체의 장
2.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
- 3.~7. (생략)

제17조(위원회의 운영)⑤ 감사는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〈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운영규정〉

제13조(개의회 의결정족수)① 대의원회는 법제6조 또는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총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④ 대의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0조3호에 해당하는 의결 사항에 대해 같은 지역의 육계업자에게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 단,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(사육확인서 포함)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)②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도별 축산업자 수 및 육계 사육수수(또는 축산물 생산량) 등을 감안하여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5조(관리위원회 감사의 위촉)② 감사는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위촉한다.